#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4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윤건영·강훈식·조 국

박지원 • 이인영 • 전현희

김영배・김 윤・이기헌

김승원 · 서영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 법률 제 호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윧
1. 음식점 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	100분 하 0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108분의 8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	(과세표준 2억원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이하인 경우에는
		11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	106분의 6
	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	104분의 4
	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104년 기 4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	액 공제특례) ①
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	
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	
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	
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	
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	
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	
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	
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율
가.「개별소비세법」제1 조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1 . 음 식 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업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 업 중 떡방앗간을 경 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2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제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 「조세특례제한법」 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 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 업	102분의 2

2 • 3	(생	략)
-------	----	----

구분	율
가.「개별소비세법」제1 조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1 . 음 식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점 경영하는 사업자 중 업 개인사업자	108분의 8 ( <u>과세표</u> 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분의 <u>10</u>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 업 중 떡방앗간을 경 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2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제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 「조세특례제한법」 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 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 업	

②・③ (현행과 같음)